

『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

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유 용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 출신 채인묵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0조에서 산학협력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비용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7조에서는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서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‘보조’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고자하고,

□ 「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제정」으로 신설되는 서울특별시 혁신성장위원회가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규정된 산학연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여 산학연정책위원회의 설치·운영규정이 삭제되고 동위원회가 폐지되었으나, 혁신성장위원회는 서울시의 미래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계획 전반에 대한 거

시적 구상을 논의하는 위원회로서 기존 산학연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사업자 선정 등 실무적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, 폐지된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「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」의 설립·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 본 의원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